



보도자료

▶ 산업보건환경팀 팀장 김병옥
사무관 허윤선

▶ 2007. 7. 31. 배 포
▶ 총 1 쪽

TEL : 504-2054~5
E-MAIL hys@molab.go.kr
FAX : 503-4491

허가 없이 석면 철거한 32곳 사법처리 - 노동부, 석면 불법 철거현장 단속 강화-

-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.
-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 하였다고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 -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.
-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.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%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·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-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“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